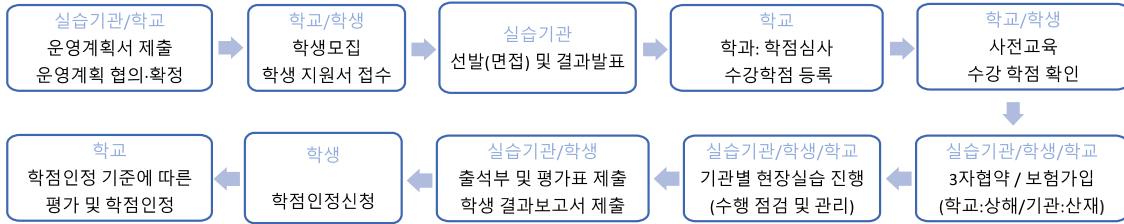


202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現場Go就”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은 전용시스템(<http://intern.khu.ac.kr>)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 시스템을 통한 진행한 현장실습 및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6.09.01.(화) ~ 2026.12.21.(월) 장기현장실습			
	※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상기 기간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 학기-방학 연계과정(4+2)의 경우는 시스템상 '학기-방학 연계과정' 필히 선택, 방학 단기현장실습 시작 시 추가 안내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수립(별지1호 서식)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제공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매뉴얼 1호 서식), 추후 현장점검 예정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주일 이내 학교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내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신청”에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지원비는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금 지급 원칙(다만, 기업이 실습참여 등록 시 실습지원금 보전 신청 하면, 현장실습 종료 후 최저임금의 25% 이내에서 보전가능) - 부득이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의 10~25% 차감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문의 바람 - 실습지원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월단위 실습시간수	월단위 최저임금 (100%)	주단위 최저임금 (100%)
	10,320	209	2,156,880	495,360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정부지원사업 가점, 은행금리 우대 등 마일리지활용)				
실습기관 참여불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체납 사업장 및 1인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학생 소속학교 및 산학협력단(단 학교기업, 학교 및 산협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등은 인정)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구분	내용			
학생 참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등록을 필해야 함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불가 •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2차 학생신청 기간부터 참여 가능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3자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선발이 완료되면 실습기관-학생-학교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 • 협약 및 운영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협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 			
학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시행 및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현장실습 불가) • 학점인정 :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56일 이상~72일 미만	9
	40일 이상~56일 미만	6	72일 이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은 공휴일 및 각종 휴일은 실습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 예비인정(수강)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일수에 따라 학점인정 - 성적은 전공과의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P(Pass)/N(Non-Pass)으로 처리 •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시행 			
실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 실습 수행 필요한 경우, 학생동의하에 주당 5시간까지 초과가능 • 주당 5시간(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하여 운영(최저시급 100%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운영 불가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 (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및 공적의무 수행일은 유급휴일로 보장 (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국가재난 발생시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요청공문 제출 후 실습기간의 25% 범위 내로 재택실습 실시 가능 			

■ 진행일정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심사
1차	2026.06.08.(월) ~	2026.06.25.(목) ~	2026.07.03.(금) ~	2026.08.11.(화) ~
	2026.06.19.(금)	2026.07.01.(수)	2026.07.10.(금)	
2차	2026.06.29.(월) ~	2026.07.16.(목) ~	2026.07.27.(월) ~	2026.08.12.(수)
	2026.07.10.(금)	2026.07.22.(수)	2026.08.05.(수)	

■ 학점인정 세부사항

1. 학점인정 범위

-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가능)
- 1회의 현장실습으로는 1개의 전공으로만 학점인정

2. 학점인정 방법

- 현장실습전공 소속 학과에서 기준 및 심사에 따라 예비인정(수강) 학점 및 이수구분 결정
 -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전공선택으로 결정한 잔여학점을 일반선택으로 결정
 -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중 한가지 이수구분으로 결정
- 장기현장실습 전공인정 가능 최대학점(※융합전공은 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의에 따라 결정)

대학/학부명	전공인정최대학점
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국제대학	6학점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이과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2학점

-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이수가능하며, 창업현장실습과 상호 중복하여 인정 불가
- 장기현장실습은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시 실습일수에 따른 학점 인정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휴학이 가능하나 추후 현장실습 참여 제한
- 단기현장실습은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 시 실습일수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나 추후 현장실습 참여제한
- 현장실습 예비인정(수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비실시간 비대면수업), 졸업논문, 사회봉사에 한하여 학점취득가능

■ 기타 안내사항

1. 해외기관 현장실습 진행

- 해외 현장실습은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가능
- 학교와 무관한 학생 개인적인 해외인턴 활동 등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불가
- 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이나, 학교 상해보험은 가입 필수
- 학과에서 실습기관 서면/현장점검을 통해 여건, 안전성, 환경 확인 후 운영
- 국내에서의 비대면 실습 등 실제 국외에서 이뤄지는 형태가 아닌 경우 인정 불가
- 적격비자로 운영(관광비자 형태 불가)하며,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2. 학생공지 사항

- 현장실습관련 학생 공지사항은 시스템에 등록된 e-mail로 안내 예정이므로 e-mail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3. 경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E-mail	서울C	국제C
http://intern.khu.ac.kr	intern@khu.ac.kr	02-961-2352 방정선 연구원	031-201-3925 박슬기 연구원

경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2026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 모든 절차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http://intern.khu.ac.kr)를 통해 진행

구분	날짜	내용	기업	학생	학교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1차 6/8 ~ 6/19 2차 6/29 ~ 7/10	① 실습기관 등록(기 등록된 기관은 아래 참여신청 진행) ② 현장실습 부서등록 및 참여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내용 자세히 작성(계획과 동일하게 실습운영) • 모집분야를 고려하여 모집전공을 선택(전공무관 불가)			
학생 지원서 접수	1차 6/25 ~ 7/1 2차 7/16 ~ 7/22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서약서 동의 • 서약서 동의 완료 후 전공 범위 내 실습기관 조회 가능 ② 실습기관, 직무, 소재지 등 확인 후 신청 • 차수별 학생당 1개의 실습 기관에만 지원 가능(장기현장실습의 경우,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2차 기간에 참여 가능)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1차 7/3 ~ 7/10 2차 7/27 ~ 8/5	① 기관 최종선발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확인 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선발 • 홈페이지 내 학생별 합격/탈락 선택 적용 후 최종 확정 • 합격생에게 실습진행 관련 안내 ② 추가모집 및 선발 지원 • 기업 : 합격생이 없어 동일 요건에 추가 인원 선발을 원할 경우, 학교 E-mail 송부(수요학생이 있을 경우 추천예정) • 학생 : 합격자를 제외하고 추가 지원을 원할 경우, 학교 E-mail 송부(수요기업이 있을 경우 추천예정)			
학점심사 (이수구분 입력)	8/11 ~ 8/12	① 현장실습 진행전공 기준, 학과에서 학생 학점심사 • 신청 자격 검증 • 예비인정학점(수강학점) 결정			
사전교육 / 수강학점 확인	8/10 ~ 실습시작일 7일 전까지	① 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사전교육 과제물 온라인 등록 • 단과대학 사전교육 이수 학생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필수 • 미이수 시 학점인정 불가 ② 학생 수강학점 내역 확인(실습 시작 후 학점이수구분 변경 불가)			
3자 협약체결		① 학생-실습기관-학교 간 3자 협약 체결			
보험가입	실습시작일 전까지 실습시작 후 7일 이내	① 학교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② 실습기관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 시행	9/1 ~ 12/21	① 현장실습 근무기준 •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이내(시간 초과시 협의 후 진행) • 현장실습이 없는 공휴일 및 각종 휴일은 실습일수 인정 불가 • 운영계획에 의거한 실습진행 ② 실습기간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수행점검 및 관리	실습기간 중	①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 사전 실습기관과 일정 협의 후 현장점검 ②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서식'에 따라 온라인 중간점검 실시			
실습결과 제출 / 학점인정 신청	실습종료 후 7일 이내	① 실습기관 및 학생은 보고서 작성 • 학생 :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설문지 작성 • 실습기관 : 출근부 및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설문지 작성, 급여내역서, 이체확인증 업로드 ② 학생 학점인정 신청 • 실습기관 및 학생 보고서 작성 완료 후 진행			
학점인정	학생의 학점인정 신청 후	① 학점인정 • 실습결과 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진행 • 전체 학생 학점인정 신청 후 3주 이후로 일괄 학점인정 예정 ※ 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달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재평가를 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			

경희대학교 학과(전공)현황

단과대학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미디어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과, 조리&푸드디자인학과,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Hospitality경영학부, 관광학부],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지리학과
미술대학	미술학부(한국화전공, 회화전공, 조소전공)
약학대학	약과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음악대학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무용학부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국제대학	국제학과, 아시아학과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융합전공	사회과학융합전공, 과학지능정보융합전공, 글로벌엔지니어링융합전공, 글로벌문화기술융합전공, 4D아트융합전공,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 K-퍼포밍아트융합전공, 실감미디어융합전공, 양자정보융합전공,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 첨단바이오소재융합전공, 첨단중자푸드테크 융합전공, 인공지능반도체융합전공, KA콘텐츠비평융합전공

-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단과대학 지침에 따라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참여학과가 모두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융합전공의 경우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 단기현장실습(방학 중)+장기현장실습(정규학기 중) 연속 실습 시 고려사항